

질 문 답 변 서

질 문	이 경 진 의원	답 변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정 농업경영과 과장 과장 과장
회 의	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의요지】 ○ 개축지구관련 실과별 예산확보대책 및 추진의지는?			

【답 변】

《문화관광과장》

○ 2000년. 4월 확정된 개발축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하면 관광휴양사업으로는 상리레포츠단지에 패러글라이딩장, 번지점프장, 유스호스텔(60실), 캠핑장에 민자16,956백만원, 삼방산스키리조트에 스키장(6면) 국민호텔(60실), 콘도미니엄(200실)에 민자46,395백만원 등 총63,351백만원을 투자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개축지구내 민자유치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나 시설등의 매입업무 대행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낙후지역에서 개발을 촉진시키자는 정부의 의도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 경제 침체로 모든 기업에서 리조트산업의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입지별 장점과 개발이익을 최대한 부각시켜 민자유치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건 설 과 장》

○ 우리군 남부 4개읍면은 '98.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434호에 의거 제 3차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후 2000. 4. 8 강원도고시 제52호로 총11개 사업에 101,690백만원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고시 되었습니다.

○ 제3차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도·농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군 남부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이용한 종합적인 관광레저 휴양지 개발과,

○ 우리군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로 고용기회의 창출과 농촌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발계획으로써

○ 민자유치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을 제외한 국가지원사업은 기반시설확충 3개사업 24,939백만원, 도시환경정비 1개사업 4,900백만원 등 총4개 사업 29,839백만원이 2004년 까지 투자 될 계획으로

○ 2000년도에는 실시설계예산 382백만원이 내시되어 창리~평안, 대화~개수간 도로의 실시설계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 2001년에는 평창교가설 1,678백만원, 창리~평안간 도로 1,092백만원, 대화~개수간 도로 1,100백만원 등 총 3,870백만원이 투입될 계획하여 우리군에서는 각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강원도에 60억원의 사업계획 예산을 신청하였으며(강원도에서 건교부에 신청)

○ 2001년도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1년 나라살림 설명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전국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완공 위주로 28개의 기 지정된 지구중 개발계획이 확정된 22개지구에 1,175억원을 우선투자토록 예산요구 되었고 강원도는 1차 개촉지구로 지정된 탄광지구 등 3개지구의 마무리 사업으로 투자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2001년도 예산이 확정된후 2001년 3월이후 강원도에 예산이 재배정 되어야 사업비가 확정될 것이며 2000년 11월 건설교통부를 방문, 확인결과 전국의 개축지구중 특수지역에 일시투자 등으로 2001년도에는 당초계획보다 작은 사업비가 내시될 것으로 전망되나 앞으로는 계획된 연도별 사업비 보다 매년 확대 요구하여 2004년까지는 모든 예산이 투자 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된 사업비는 2004년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 관광휴양 2개사업은(상리레포츠단지, 삼방산스키리조트)160억, 460억의 거액이 투자되는 관계로 IMF이후 경제정체로 인해 민간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삼방산 스키리조트는 지가상승등 현지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참여자가 없을시 다른 사업으로의 계획변경을 신중히 검토 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기반시설사업으로 계획된 평창교 가설공사는,

○ 135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소관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비 3,822백만원과 건설교통부소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9,678백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 2000년까지 교통소통 해소대책 사업비 30억원(1999년 608, 2000년 2400)을 확보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도 계속해서 교통소통해소 대책 사업비와 개축지구 사업비를 투자 할 계획이나

○ 정부예산이 심의중에 있고 2001년도 3월경이 되어야 사업비가 확정 될 것으로 전망 되는바 우리군에서는 강원도 및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본 평창교가 계획년도보다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자료

1. 개발촉진지구지원 년차별 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 년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24,939	382	3,870	7,229	7,229	6,229
평창교가설공사	9,678	-	1,678	3,000	3,000	2,000
창리~평창간 도로	4,752	120	1,092	1,180	1,180	1,180
대화~개수간 도로	10,509	262	1,100	3,049	3,049	3,049

2. 강원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순위

- 1차년도 : 탄광지역(태백시, 삼척시 도계읍, 정선군, 영월군 상동읍)
- 2차년도 : 영월군, 화천군
- 3차년도 : 평창군, 인제군, 정선군
- 4차년도 : 양구군, 양양군
- 5차년도 : 횡성군

《도시경제과장》

○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시경제과 소관 사업은 미탄상수도 시설확충으로 사업량은 취·정수장 개량 1,000T/D, 송배수관 8km로 총 4,900백만원의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 4,900백만원중 국비는 50%인 2,450백만원으로 환경부 예산이며, 나머지 2,450백만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탄상수도는 근간에 실시한 노후관교체 사업과 누수탐사 등으로 현재 수량은 충분하나 취수원이 석회암 지역으로 경도가 높아 물맛이 거칠고 끓이면 양금이 생기는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미탄면에서 석회암 성분이 적은 회동지역의 계곡수를 취수하여 혼합 사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연도별 투자 계획(백만원)					비고
		계	2001	2002	2003	2004	
계		4,900	120	1,550	2,150	1,080	
기본·실시설계	1 식	120	120				
취·정수시설	1,000T/D	2,500		1,250	1,250		
관로시설	8km	1,800			800	1,000	
보상등 기타	1 식	480		300	100	80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01년도 1월중 강원도와 협의하여 환경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실무자를 직접 만나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지원 요청을 한 뒤 도시경제과장이 미탄면 지역대표 등과 함께 환경부를 방문할 계획이며,

우선 본 군의 사업 추진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용역비 120백만원을 계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 신청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 개축지구와 관련된 지역특화사업 부문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계획은 총 5개소에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등 85억원을 2004년까지 년차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 평창읍 산머루 가공공장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7200만원을 투자 가공공장을 활성화 시킬 계획이며,

○ 평창읍 상리 산채 가공공장 등 4개소는 품목개발과 사업의 타당성, 경영수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답 변 서

질 문	이 경 진 의원	답 변	환경복지과장
회 의	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p>【질의요지】</p> <p>○ 평창군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대하여?</p>			

【답 변】

○ 평창군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제79회 평창군의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평창군 분뇨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2000. 8월 동부지역 6개리 주민대표 방문시 농로포장등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소규모 사업이 아닌 장래에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시는 재원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사업의 타당성·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재원 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2001년도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 상리장암산등산로 정비 16백만원
- 중부리남산과 연계된 산림욕장 설치 400백만원
- 상리도수로개량공사 25백만원, - 지동저수지시설공사 100백만원
- 고길리농업용수개발 20백만원, - 노론리소하천정비사업 20백만원
- 조동리교량가설공사 140백만원, - 이곡리소교량가설공사비 80백만원
- 고길보건지소정비에 3백만원등 총80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질 문 답 변 서

질 문	이 경 진 의원	답 변	기 획 실 장 자 치 행 정 과 장
회 의	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질의요지】 ○ 평창군정조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방안 재검토 의지는?			

【답 변】

《기획실장》

○ 평창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기구로서

-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을 토의하고
-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등
- 조례가 정한 범위내의 각종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자문·심의한 것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 금년 한해 군정조정위원회서 심의 의결한 건수는 35건으로서 각 실과소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위원들이 충분한 심의로서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있으며, 평창교 가설공사는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사업임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되었고, 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지난 1972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민선 자치단체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 평창교 가설공사 사업비 135억원은 개축지구 사업비로 97억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38억원(군비20%포함)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1년도 계속비 사업비중 의회의 승인을 받은 33억이 10억원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당초 교통소통해소대책 사업비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포함하였던 것인데 그중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강원도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고 전체사업비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도 군정조정위원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 재위촉에 관한 사항과 여성위원 위촉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사위원회 설치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3인은 위촉직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촉직 위원 3명을 두는 취지는 인사권자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함보다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인 임용시험 또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 전보 임용기준 사전심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징계심의, 인사관련 조례·규칙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심의 의결토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특히 위촉직은 법관,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또는 법률학, 행정학,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직에 있는자, 또는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는 회의체로서 공무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권리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률관련 전문 학식이 있는자를 우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의 경우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차선책인 공직경험자를 위촉하고 있는실정입니다.

○ 따라서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위원 재위촉과 여성위원 위촉여부는 지역의 인적자원이 충족되고 현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임용권자의 의결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법관출신이 아닌 공직출신의 위원일지라도 회의체내에서 자유로이 위원의 의견을 피력하고 합리적이고 공정성과 개관적인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